

금강유역환경청

종합감사 결과 보고서(안)

2018. 3.



환경부
감사관실

I |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목적

- 금강수계의 수질관리와 일반 환경업무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위임된 각종 사무와 지도·점검 이행실태 등을 확인·평가하여,
- 행정능률 향상과 업무수행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 등을 제시

2. 감사종류 및 범위 : 종합감사, 2015년 1월 이후 수행 업무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 : '18.1.15~2.2. 【15일간, 예비감사('18.01.15~01.19) 포함】
- 감사인원 : 6명(시민감사관 2명 포함)

4. 중점 감사사항

- 금강수계기금 집행을 통한 수질오염개선사업 관리실태 등 확인
- 조류경보제, 수질감시, 비점오염원 관리 등 적정이행 여부 확인
-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업무협의 등 관리 조사
-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추진, 환경기초조사사업 등 운영 실태

II | 감사 결과

1. 총 평

- 금강수계의 수질관리와 수계기금 사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,
 -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등에 대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통보·개선과 함께 본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요구됨
- 또한,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지도·점검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업무담당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도 필요함

2. 주요 지적 사항

< 4대강 수계관리기금 회계 전산시스템 구축 >

-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, 지방자치단체회계시스템과 연계되는 “수계기금관리전산시스템”이 없어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산시스템 구축이 요구됨

<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조건과 달리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 >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승인기관의 설치 승인 조건 내용을 변경*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내용에 대해 관련법에 명확한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시행자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

* 산업단지 외 폐기물 반입처리, 폐기물 발생량 변경,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협의 여부

< ‘건강영향 항목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방향 부재 >

-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농도(벤젠, 비소 등)가 이미 위해성기준(10^{-6})을 초과하는 경우 평가협의 방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

< 화학테러 · 사고 대응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미흡 >

- 자체점검(월간·격월간)에서는 모두 양호하나, 복합가스측정기(MX-6) 등의 검지센서 검·교정(1회/년) 시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년 교체하고 있으므로 계측장비특성에 맞는 검·교정주기 마련이 필요함

3. 처분 요구내역

- 지적 26건 : 처분요구 27(행정 20, 신분 3, 현지시정 3, 수범사례 1)
(단위 : 건수, 천원)

총계	행정상				신분상				재정상		현지 조치	수범 사례	
	계	개선	시정	주의· 경고	통보	계	징계	경고	주의	회수	금액		
27(6)	20(6)	8(5)	-	9(1)	3	3	-	1	2	-	-	3	1

* ()은 동일 건에 대해 종복으로 처분을 요구한 사항임

○ 지적 · 처분요구 일람표

지 적 사 항		처분요구							
① 4대강 수계관리기금 회계 전산시스템 구축									
○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업무 (계획·수입·배정·지출·결산·정산 등)를 전산화하여 ‘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’, 지방자치단체회계시스템과 연계 관리할 수 있는 ‘수계기금관리전산시스템’의 구축이 필요함									
<4대강수계기금 관리시스템 운영 현황>									
구 분	지출(총무과)		배정(재정과)		수입(재정과)		결산(재정과)		사용 방식
	시스템	사용방식	시스템	사용방식	시스템	사용방식	시스템	사용방식	
▽▽청	기금관리 시스템	지출결의	수질개선특별 회계시스템	지출결의	수질개선특별 회계시스템	수입 결의	미구축	엑셀 업로드	
☆☆☆청	살리미	지출결의	살리미	배정결의 (엑셀작성)	살리미	수입결의 (엑셀작성)	미구축	엑셀 업로드	
금강청	살리미	지출결의	살리미	배정결의 (엑셀작성)	살리미	수입결의 (엑셀작성)	미구축	엑셀 업로드	
★★★청	살리미	지출결의	살리미	배정결의 (엑셀작성)	살리미	수입결의 (엑셀작성)	미구축	엑셀 업로드	

* 기금관리시스템, 수질개선특별회계시스템 : ▽▽수계기금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

* 살리미시스템 : 1999년 재경부가 구축한 국가재정정보시스템(기능개선 불가능 상태)

② 금강수계기금운영규칙 규정 미비

- 「금강수계기금운영규칙」에 수계기금을 회계 처리할 경우 서식과 장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거나 준용규정을 두어야 하나,
 - 교부용 지출원인행위서 및 지출결의서 서식의 경우 수계기금의 양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일반용 서식은 규정이 없고,
 -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사무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의 장부서식도 없으며, 출납명령관 및 지출관이 장부를 비치·기록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음
-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 등에 대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·각서·협정서·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하나,
 - 자금출납명령관은 계약증거 서류가 아닌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 등록증, 계약대상자의 예금통장 등만 첨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자금출납관에게 송부하고 있고,
 - 자금출납관은 계약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계약 성립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가를 지급(15~17, ○○건, 계약금액 ●●●만원)하였음

통보

개선

부서주의

- 수계기금 자금출납관이 수계기금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완료 통지서 등 영수증서를 받아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에 편철·보관하여야 하고, 영수증서를 받기 곤란할 때에는 채권자 및 지출금액을 명백히 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에 편철·보관하여야 하나,
- 수계기금 자금출납관은 기금을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 완료 통지서를 받지 아니하여 기금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에 편철하지 아니하였고,
- 영수증서를 받지 아니한 사유서도 작성·편철하지 않음(15~'17, ○○전, 지출금액 ◇◇◇억원 상당)

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부적정

- 금강청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 및 금강 수계관리기금 회계관계공무원(수입징수관, 재무관, 계약관, 지출관, 출납공무원과 그 분임자)의 직위를 갖는 자를 재정보증보험 가입*하여야 하나
* 가입현황 : 국고금관리 17개(연 ◆◆◆만원 가입), 수계기금 10개(연 □□□만원 가입)
- 계약담당공무원과 여유자금운용담당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고금회계와 기금회계의 피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(여유자금운용담당자 연 ■■■만원)하고,
- 새만금지방환경청(기획과장 및 출납담당자)과 국립환경과학원(연구지원과장 및 출납담당자)의 분임자금출납(명령)관은 의무적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이나 가입되지 않음
-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증권은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- 금강청과 금강수계위는 '15~'17년 가입한 총 △건의 재정보증보험증권을 소홀히 보관하여 모두 분실하였음

④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조건과 달리 영업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
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연간 폐기물발생량이 2만톤 이상, 조성면적 50만㎡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·설치·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(주로 매립시설이 문제)을 10년 이상 설치·운영토록 하고 있음

부서주의

개선

- 당초,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승인기관의 설치 승인조건 내용을 변경*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신청한 내용에 대한 관련법에 명확한 처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시행자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

* 산업단지 외 폐기물 반입처리, 폐기물 발생량 변경,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 협의 여부

⑤ 폐기물최종처리업 적정통보 시 폐기물종별 처리기준·방법 명기
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을 규정*하고 있으나,

* (폐유기용제) 할로겐족 고체상태는 고온소각, (폐흡수재·폐흡착제) 가연성은 고온소각, 불연성만 매립, (분진) 폴리에틸렌 재질의 포대에 담아 매립, (오니) 수분함량 85% 이하로 하여 매립, (폐합성고분자화합물) 지름 15cm이하로 파쇄·절단 후 매립 등

-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 시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만 통보하고 있어 사업자는 영업대상 폐기물을 모두 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처리방법까지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함

통보

⑥ 과태료 체납처분 조치 미흡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3조는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- 과세정보 제공은 「식품위생법」 제82조제3항의 예시와 같이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(법제처 유권해석)하고 있음에도,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관련법에서는 과세정보 제공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

- 금강유역환경청은 과태료 체납자(업체)에 대해 납부 독촉고지서만 주기적으로 발부하고, 체납자(업체)에 대한 체납관리가 미진

- 체납자 행방불명,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'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준칙'이 없어 20년이 지난 체납자에게도 독촉만 하고 있음

통보

⑦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 부적정

-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관계 법령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확정한 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,

- ▲▲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,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1~2년

관련자 주의

<p>동안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자료 요구 후에 보고서 제출을 촉구함에 따라 보조금액의 확정 등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,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정산도 최소 12일, 최대 10개월을 초과하여 정산이 완료되거나, 현재 진행 중에 있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, 기재부) 개통(17.1)되어 '17년 사업부터는 보조금의 신청, 집행, 정산보고서 등이 실시간 관리 되도록 전산자료 입력이 자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, - '17년 완료된 '▽▽시 ▼▼동 위생매립장 조성사업'의 정산보고서 미 입력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음 <p>*'18년 신규·계속사업의 사전 예산협의 검토요청서 등은 예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됨</p>

<p>[8] 위반확인서 관리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반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「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·점검규정」에 따라 책임부서 국장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아야 하나, - 환경관리과 확인서 관리담당자는 위반확인서 분실(3장) 사실을 2017.12월 중순 경 인지하였음에도 확인서 분실내용을 보고하지 않음 	<p>관련자 경고</p>
--	-------------------

<p>[9] 서식지외보전기관 국고보조금 정산 지연처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보조금집행실적보고서(정산서)를 익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고, 유역(지방)환경청장은 국고보조금 정산결과를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, - '15~'16년도 서식지외보전기관(△개 기관 ◀건의 사업) 국고보조금 정산에 있어 보조금집행실적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아 '15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은 '16. 12. 30, '16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은 '17. 11. 27. 완료되었음 	<p>부서주의</p>
---	-------------

<p>[10] 생태·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관리(보존)계획 미수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소황사구 생태·경관보전지역' 및 '두옹습지 습지보호지역' 관리(보전)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'14.12.30. 완료되었으나, -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음에도 '소황사구 생태·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' 및 '두옹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'이 수립되지 않음 	<p>부서경고 개선</p>
---	--------------------

<p>[11] 야생동물 구조·관리센터 지도·점검 및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야생동물 구조·관리센터 장이 매년 1.31.까지 제출한 구조·관리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센터를 지도·점검하고, 점검결과 및 구조·관리 현황은 2월10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나, - '15~'16년에는 지도·점검 미실시, ▷▷센터('15~'16년도) 및 ▶▶센터('16년)에서 야생동물 구조·관리현황 미제출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 	<p>부서주의</p>
--	-------------

<p>[12] '건강영향 항목'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 부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*의 건강결정요인 대기질 발암성 물질** 발암 위해도는 $10^{-4} \sim 10^{-6}$까지로 정하고 있는데, 원칙적으로 10^{-6}을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,
<p>*1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, 2. 에너지개발, 3. 폐기물처리시설, 분뇨처리시설 및 출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</p>
<p>** 6가크롬, 벤젠, 염화비닐, 카드뮴, 비소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농도가 이미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, 협의방향을 제시하는 명시적인 규정***이 없음

〈위해성기준 현황농도 초과사업〉

사업명 (협의기관)	건강영향평가 결과			협의내용
	기준	현황농도	항목	
♠♠♠♠♠ 건설사업 (환경부 본부, 발전소)	10^{-6}	1.08E-05 6.55E-06	6가크롬 벤젠	◦ 위해도 변화 모니터링 실시
♥♥♥♥ 산업단지 ♥♥에너지공급사업 (환경부 본부, 발전소)	10^{-6}	1.99E-06 2.718E-03	비소 6가크롬	◦ BAT 설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
♧♧♧♧♧ 산업단지 ♧♧타운 건설사업 (금강유역환경청, 소각+매립사업)	10^{-6}	3.44E-06 8.64E-05 1.08E-06	비소 6가크롬 카드뮴	◦ BAT 설치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◦ 협의기준 강화(배출허용기준 대비 80%) ◦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유해대기오염 물질 및 악취에 대한 위해성 평가

*** (참고) 유역관리법무지침(제15조)에는 특별관리대상 수역구간으로 분류된 유역인 경우, 활당 부하량을 초과한 경우, 기타 검토사항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협의재고 통보를 규정으로 명시

<p>[13] 지하수 측정망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사후조치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결과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지체 없이 소관 시·군·구 및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나, 	<p>부서주의</p>
---	-------------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2년간(16~'17) 총대장군수 등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23개 지점 중 6개 지점(비음용지하수)에 대하여 관할 시장·군수 등에게 최대 2개월 경과 후 통보하였음 -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7개 지점은 시장·군수 등에 통보하였으나, 그 중 7개 지점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사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	
[14] 유역관리업무지침과 상이한 업무내용 등 규정 정비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환경과학원장, 유역환경청장은 유역관리업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'유역관리업무지침'을 준수하여야 하나, - "유역별 오염원의 조사 등¹⁾", "유량조사²⁾", "수역별 수질평가³⁾"의 업무수행 시 절차·방법 등을 업무지침과 다른 별도 계획을 수립한 관계로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전국오염원조사 체계 변경, 업무추진 절차 조정 등 2) 유량조사 방법 및 절차 변경, 유량조사 결과 활용방법 변경 등 3) 지침 내용과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평가규정의 내용과 조정필요 - 또한, 금강수계 □□천(●●천) 지역의 2015년도 ●●계를 조사한 ○●●○조사(◆◆◆◆과학원)와 □□천 유역 연구용역사업(■■대학교 등) 실측조사 결과에 편차⁴⁾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○●●○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4) (●●계) □□천 유역 연구용역 조사: ■■■마리, ○●●○ 조사: ■■■■■마리, 차이 : ■■■마리 	개선
[15] 연구용역사업 관련 규정 미준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기초조사사업 연구기관은 연구원의 직급별 적용기준(책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보조원, 보조원)에 따라 자격요건에 맞는 참여연구원을 선정하고, 연구원의 직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성과물에 표기하여야 하나 - ■■■■■연구소는 2016년 ■■■수계 ■■■■■조사(▼▼오염원 종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연구 등 2건)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보조원 자격 요건(일반적, 기능적)에 해당하는 직원(2명)을 연구원으로 등재 	신분상 주의
[16] 연구용역사업 계약규정 미준수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금강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' 외 61건('15~'17년)의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, - '비점오염원 종합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연구' 등 총 32건의 연구 용역 조사사업에 대해 준공검사를 지연(21~271일)하였음 	부서주의

개선 부서주의	[17] 수질TMS(측정망) 초과현황 신속통보 및 초과시설(경보) 관리 부적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국환경공단은 금강청 관할 수질TMS설치 공공하·폐수처리시설(115개소)을 관리하면서 최근 2년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총 48건(하수 16건, 폐수 32건)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나, - 한국환경공단은 행정청에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질초과 현황을 평균 10일정도 소요(최대 48일)하여 통보함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오염부하량 할당 사업자 중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값이 할당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에 대해 수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, - 최근 2년간('16~'17년) 오염부하량 할당항목(T-P)이 초과한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 지도·점검을 이행하지 않음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③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해 금강수계 내 수질자동 측정망(13개소)을 운영하고, 그 결과는 금강청에 통보해 주고 있으나, - 최근 2년간 '관심' 단계 경보발령을 69회('16:29회, '17:40회) 실시하면서 관련 행정기관에 경보발령 통보와 오염원 관리강화 협조요청은 하였지만, 경보발령에 대한 원인조사와 주변오염원 단속 강화조치 등은 하지 않음
	[18]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금 정산 지연 및 사후계획 미(지연)제출
부서주의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지자체는 보조사업 완료보고서와 사후 관리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,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□□군 ■■■의 경우 '16.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, '18.1월에 보조금 완료보고서를 제출, 사후관리계획은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았고, ☀☀☀시 !!!천의 경우 '15.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'17.9월에 사후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제출독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② 지자체는 '사후관리계획'을 별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용역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데, 관련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'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'에 규정하고 있어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	[19]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처리 지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처리기한은 10일이나 보완이 빈번하고, 3회 이상의 보완이 49%이상으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공단의 기술검토기간이 1~3개월 정도 소요되고, 2차 이상 보완의 경우 기존 보완의견 범위 내에서 의견을 주어야 함에도 추가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신고서 처리가 미흡 	
<p>▣ 화학테러·사고 대응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화학테러·사고 대응장비에 대해 월간·격월간 자체점검 규정에 따라 실시한 점검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- '화학테러·사고 대응장비 관리규정'에 계측장비 검·교정 주기는 없으나, 계측장비에 대해 검·교정(1회/년) 하면, 복합가스측정기(MX-6) 등의 검지센서가 매년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교체하고 있으므로, 계측장비특성에 맞는 검·교정주기 마련이 필요함 	개선
<p>▣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비효율 및 수입업체 관리 부적정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영업자에 대한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, - 전년도 정기검사 결과 우수관리 사업장(■■개소: '15년 ■■개소, '16년 ■■개소, '17년 ■■개소)은 서류점검으로 대체하지 않고 지도·점검에 포함시키고,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·점검 대상인 영업자(취급시설 부적합 판정 받은 128개소)는 지도·점검 계획에서 제외함 ② 협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화학물질 수입통관자료를 비교·검토하여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미제출 의심업체 내역을 유역환경청에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화학물질을 관리해 왔으나, - ☺☺청이 '15년부터 ☺☺☺자료 제공을 중단하여 협회가 환경청에 보고하는 화학물질확인 업무현황 자료(수입화학물질의 물질정보 등)만으로는 ☺☺☺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서, 유역환경청에서는 최근 2년간의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	부서주의 개선
<p>▣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·점검 계획 수립 미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최근 2년간 지도·점검 미실시 사업장과 환경 관련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중점관리등급으로 연간 지도·점검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하여 관리해야 하나, - 최근 2년간 지도·점검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점검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, 중점관리등급이 아닌 20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최소 2회~최대 5회까지 453회의 지도·점검을 실시함 	부서주의
	현지시정
	현지시정
	현지시정
	수범사례 표창

4. 행정사항

-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, 그 결과를 「환경부 자체감사규정」 제18조제4항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고
- 조치요구 및 조치사항 등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처분대상자는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한 「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」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